

## 입출금이체서비스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유화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입출금이체서비스(이하 '이체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의 발생)** 이체서비스는 고객이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을 날인(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날의 익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을 무효로 한다.

1. 다른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2. 필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제휴은행'이라 함은 회사가 이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
2. '이체카드'라 함은 제휴은행의 현금카드 기능이 부과된 회사 증권카드
3. '이체입금'이라 함은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회사계좌로 입금하는 것
4. '이체출금'이라 함은 회사계좌에서 출금하여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것

**제4조(이체의 종류)** 이체서비스의 종류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유선이체 : 고객이 회사 영업점으로 전화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지정 은행계좌로 자금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2. 창구이체 : 고객이 증권카드나 통장을 지참하여 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은행계좌로 자금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3. CD이체 : 고객이 이체카드 또는 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CD기, ATM기를 통하여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경우
4. PC뱅킹 : 고객이 PC를 통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지정 은행계좌로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경우

**제5조(본인확인)** 입출금 이체거래시 본인확인인 계좌명,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사용 등으로 하며, 회사 고객의 이체신청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이체입·출금)** ① 이체입금할 때는 제 4조의 이체서비스의 내용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체서비스를 이용한 출금은 고객이 은행의 CD기를 이용하거나, PC, 방문 등을 통하여 이체출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PC에 의한 경우 회사는 본인 확인 후 해당금액을 출금하여 신청서상의 본인 은행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③ 이체출금은 본인이 날인한 출금전표 없이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이체출금한도)** 이체출금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출금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체출금시 은행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이체출금은 별도의 통지없이 취소된다.

**제8조(이용시간)** 이체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09:30부터 16:00까지로 한다.

**제9조(회사계좌사항)** 약정한 회사 계좌가 통합된 경우 통합계좌에 의하여 기존 개별 약정 및 거래는 유효하며 폐쇄되었을 경우 입·출금에 관한 약정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10조(은행계좌사항)** 약정한 은행계좌가 통합, 폐쇄, 명의변경, 통장분실, 인감분실, 혹은 질권설정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지체없이 지정계좌를 해지 또는 변경해야 한다. 만약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않는다.

**제11조(수수료)** 이체 입출금을 위한 온라인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며, 경우에 따라서 회사가 보조할 수 있고 회사는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HTS를 통해 고객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신청서 내용 변경 및 해지)** 이체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거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증권계좌가 통합, 폐쇄된 때에는 별도로 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CD에 의한 인출)** ① CD를 통한 현금 또는 수표의 인출 및 계좌이체는 해당계좌의 거래인감의 날인 없이 고객의 계좌에서 출금 처리된다.  
② CD의 1회당 인출 및 계좌이체 한도금액과 1일 사용회수, 사용시간, 사용제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14조(이체카드의 분실, 도난 등과 면책)** ① 고객이 이체카드를 분실, 멸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하며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재발급한다.  
② 신고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제15조(이체카드의 사용중지)** 다음 각 호에 경우 CD를 통한 이체카드 사용은 중지될 수 있다.  
1. 고객으로부터 이체카드의 분실, 도난신고를 받은 때  
2. CD 사용시 비밀번호를 3회이상 오류 입력시  
3. CD의 고장, 정전 등의 사고나 온라인 취급에 필요한 기기, 설비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거래내용의 조회)** ①고객이 거래 내용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의 서면 요구시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고객은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내역의 서면제공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회사 콜센터로 전화요구(02-566-5522)  
2. 본사 영업팀 및 각 영업점 방문 요구

**제17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 회사는 모든 이체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고객이 계좌폐쇄를 요청하였거나 자동폐쇄 요건에 해당되어 폐쇄된 경우
2. 고객의 계좌가 통합계좌 편입요건에 해당되어 회사 통합계좌로 편입된 경우
3.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내부기준에 이용자의 자격이 미달하는 경우
4. 공중전기 통신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고의로 통신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6.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8조(기타)**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에도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 상관례를 따르도록 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